

대전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2264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22640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단1221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철

피고, 피항소인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관

변론 종결2024. 8. 29.

판결 선고2024. 10. 17.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단122179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와 C 사이에 2018. 10. 10. 체결된 매매계약, C과 피고 사이에 2018. 10.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20. 12. 30.자 배당표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유가형

판사이호영

별지